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현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20 발의연월일: 2022. 9. 23.

발 의 자:배현진·김성원·황보승희

정점식 · 최형두 · 서일준

임병헌 · 조명희 · 이철규

정희용 • 이용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재청은 1962년 「문화재보호법」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. 그동안의 보호체계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현재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.

그러나, 이제 「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」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 으로 받아들이고,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 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
이에, 문화유산 · 자연유산 · 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

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,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(안제11조의2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유산기본법안」(의안번 호 제17521호), 「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15 호)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14 호),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 번호 제17511호),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」(의안번호 제17518호), 「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 안번호 제17512호),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7523호), 「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17호), 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의안번호 제17513호), 「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의안번호 제17522호), 「한 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의안번호 제17516호)의 의 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4항제3호 중 "문화재"를 "국가유산"으로 한다.

제5조의2제3항제3호 중 "문화재"를 "국가유산"으로 한다.

제11조의2의 제목 "(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 관계)"를 "(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른 행위 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「문화재보호 법」에 따른 지정문화재"를 "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지정문화유산"으로, "등록문화재"를 "등록문화유산"으로, "임시지정문화재"를 "임시지정문화유산의 위치와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 구역 및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자연유산"으로. "「문화재보호법」" 을 "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| 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지정지구와 「문 화재보호법 _ 제13조"를 "지정지구와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」 제13조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2 조"로, "관하여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3조"를 "관하여는 「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

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5조(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 | 제5조(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 |
| 회) ① ~ ③ (생 략) | 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|
|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 | 4 |
|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| |
| 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| |
|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| |
| 기획재정부장관, 행정안전부장 | |
| 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 | |
| 각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| |
| 위원으로 한다. | |
| 1.・2. (생 략) |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|
| 3. <u>문화재</u> 에 관한 학식과 경험 | 3. <u>국가유산</u> |
| 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| |
| 4. (생 략) | 4. (현행과 같음) |
| ⑤・⑥ (생 략) | ⑤·⑥ (현행과 같음) |
| 제5조의2(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 | 제5조의2(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 |
| 위원회) ①・② (생 략) | 위원회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 |
|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 | ③ |
|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| |
| 서 해당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 | |
| 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 | |
| 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| |
| 다. 이하 같다)이 위촉하며, 위 | |
|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| |

- 1. 2. (생 략)
- 3. 문화재, 경관 및 도시계획 관 련 전문가 각 3명 이내
- ④·⑤ (생략)
-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 계) ① 지정지구와 「문화재보 호법 | 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|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, 같은 | 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위치 및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문 화재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 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 📗 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다.

② 지정지구와 「문화재보호 법」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국가유산-----
- ④·⑤ (현행과 같음)
- 제11조의2(「문화재보호법」에 | 제11조의2(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) ① ----- 「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_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---------- 등<u>록문화유산</u>---------- 임시지정문 화유산의 위치와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및 같은 법에 따 른 임시지정자연유산-----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_ --
 - ② 지정지구와 「문화유산의 보 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🛮 제13 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| 조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-----

법」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.

허가에 관하여는 「문화재보호 ---- 관하여는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 13조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---.